

2023회계연도
정무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증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국 가 보 훈 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 정 거 래 위 원 회

2024. 8.

정 무 위 원 회

목 차

I. 소관부처 회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
II. 심사경과	2
III. 예비비 사용내역	4
IV. 검토보고 요지	6
V. 대체토론 요지	26
VI.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27
VII. 심사결과	28
VIII. 소수의견 요지	29
IX. 시정요구사항	30

2023회계연도 정무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2024. 8.

정무위원회

I. 소관부처 회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국가보훈부 소관 일반회계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일반회계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Ⅱ.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4년 5월 31일

2. 회부일자 : 2024년 6월 27일

3. 상정 및 의결일자

가. 국가보훈부 소관

○ 제417회국회(임시회)

- 제1차 정무위원회(2024. 8. 26.)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회부)

-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4. 8. 27.)

(상정 · 심의 · 의결)

- 제2차 정무위원회(2024. 8. 28.)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소위원회 회부)

-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4. 8. 28.)

(상정 · 심의 · 의결)

- 제3차 정무위원회(2024. 8. 29.)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의결)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제417회국회(임시회)

- 제1차 정무위원회(2024. 8. 26.)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회부)

-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4. 8. 27.)
(상정 · 심의 · 의결)
- 제2차 정무위원회(2024. 8. 28.)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소위원회 회부)
-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4. 8. 28.)
(상정 · 심의 · 의결)
- 제3차 정무위원회(2024. 8. 29.)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의결)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제417회국회(임시회)
- 제1차 정무위원회(2024. 8. 26.)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회부)
-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4. 8. 27.)
(상정 · 심의 · 의결)
- 제2차 정무위원회(2024. 8. 28.)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소위원회 회부)
-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4. 8. 28.)
(상정 · 심의 · 의결)
- 제3차 정무위원회(2024. 8. 29.)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의결)

Ⅲ. 예비비 사용내역

1. 국가보훈부 소관

- 2023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소관 예비비는 처분부운영기본경비(총액)(7112-200) 사업에 9,000만원, 처분부운영(7112-270) 사업에 28억 4,500만원, 청사유지보수(7166-426) 사업에 1억 5,300만원, 사무및민원환경개선(7166-427) 사업에 1억 9,000만원, 정보화사업(7169-501) 사업에 1억 3,200만원 등 총 34억 1,000만원으로, 이 중 28억 8,800만원을 지출하고 5억 2,200만원은 불용되었음.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비비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처분부운영기본경비 (총액) (7112-200)	90	72	-	18
처분부운영 (7112-270)	2,845	2,350	-	495
청사유지보수 (7166-426)	153	153	-	-
사무및민원환경개선 (7166-427)	190	181	-	9
정보화사업 (7169-501)	132	132	-	-
소 계	3,410	2,888	-	522

2.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2023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예비비는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7035-321) 사업에 4억 2,400만원, 미디어·콘텐츠산업 융합발전위원회 운영(7035-322) 사업에 6억 5,800만원 등 총 10억 8,200만원으로, 이 중 7억 4,4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3,600만원은 불용되었음.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비비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 (7035-321)	424	245	-	178
미디어·콘텐츠산업 융합발전위원회 운영 (7035-322)	658	499	-	158
소 계	1,082	744		336

3.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2023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기관운영 비총액인 건비성 기본경비(7011-250) 사업에 2억 7,0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음.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비비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기관운영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50)	270	270	-	-
소 계	270	270	-	-

IV. 검토보고 요지

1. 국가보훈부 소관: 없 음

2.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1) 국가위원회 구성 사전준비 미흡에 따른 예비비 집행실적 부진

국무조정실은 지출이 미리 예측되었던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 사업을 본예산이 아닌 예비비로 집행하였고, 예산 과다추계 및 국가위원회 구성 지연 등으로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예측할 수 있는 지출은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집행해야 하는 경우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불용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8조에서는 국가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민간위원 과반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전략, 지속가능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두며, 국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 추진진단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¹⁾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8조(국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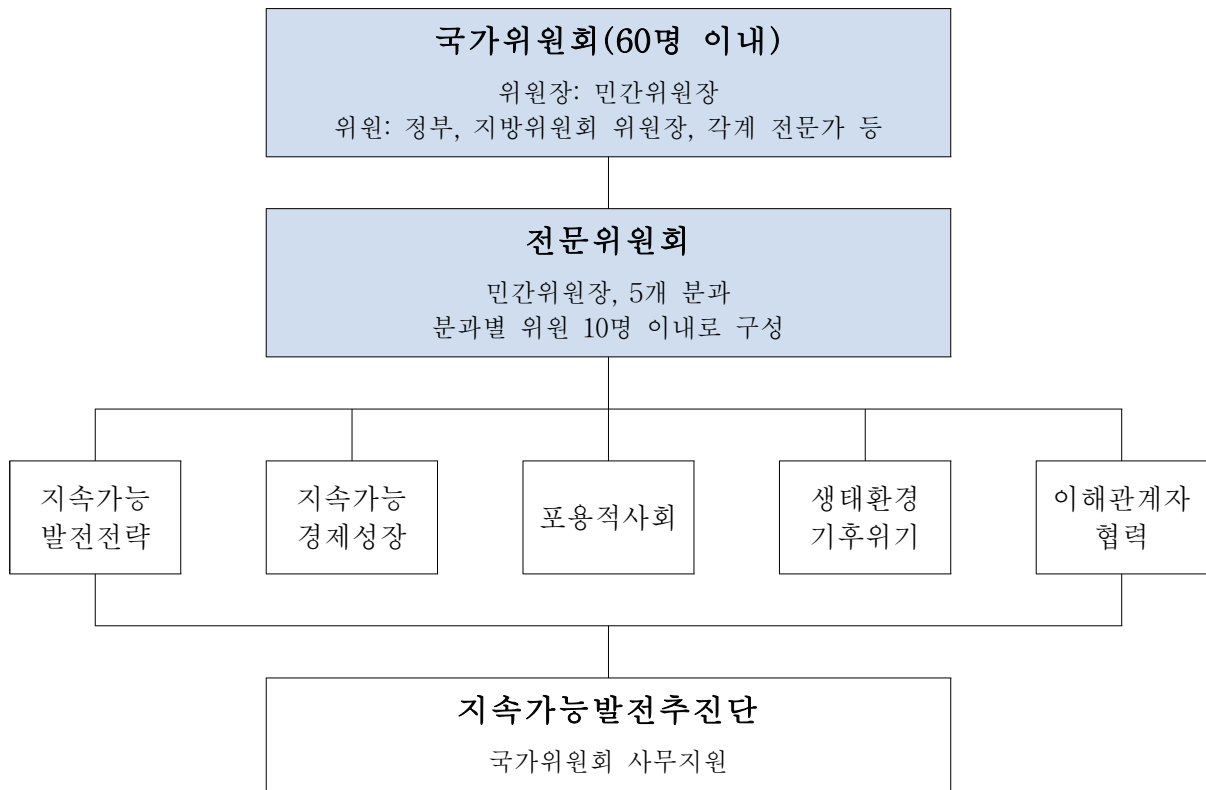
② 당연직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의 지방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민사회단체·학계·산업계·교육계·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국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구성〉



(자료: 국무조정실)

- 국무조정실은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 사업의 예산을 2023년도 본예산에 미편성하였으며, 2023년 3월에 ① 회의수당, 인쇄비, 회의장·장비 임차료 등 국가위원회 운영 9,360만원, ② 지속가능발전정보망 운영을 위한 관리용역비 8,000만원, ③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방향 연구를 위한 일반연구비 5,000만원, ④ 지속가능발전 우수사례 조사

1. 지속가능발전 전략
 2.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3. 포용적 사회
 4.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5. 이해관계자 협력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 ⑥ 국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위원회에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을 둔다.

및 정책연구 포럼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 2억원 등 예비비 총 4억 2,360만원을 배정받아 집행하였음.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사업 예비비 배정내역〉

(단위: 천원)

내역	세목	산출근거	배정액(천원)
① 국가위원회 운영	일반수용비 (210-01)	◦ 국가위원회 운영 - 본회의 수당(대면): 200천원×30명×1회 - 본회의 수당(서면): 150천원×30명×1회 - 행정계획 검토: 150천원×10명×20회 - 회의자료 인쇄: 20천원×50부×1회 ◦ 전원위원회 운영 - 본회의 안건 검토(서면): 150천원×10명×5분과×2회 - 행정계획 검토: 150천원×10명×20회	86,500
	임차료 (210-07)	◦ 회의장 및 장비 임차: 5,000천원×1회	5,000
	사업추진비 (240-01)	◦ 30천원×70명×1회	2,100
② 지속가능발전정보망 운영	관리용역비 (210-15)	◦ 80,000천원×1식	80,000
③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방향 연구	일반연구비 (260-01)	◦ 50,000천원×1식	50,000
④ 지속가능발전 우수사례 조사 및 정책연구 포럼	민간위탁 사업비 (320-02)	◦ 200,000천원×1식	200,000
합 계			423,600

(자료: 국무조정실)

□ 그런데, 이와 같이 국가위원회 운영 사업을 2023년도 본예산에 미편성하고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등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음.

○ 「국가재정법」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²⁾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예비비 요구에 앞서 당초 본예산 편성시 예측할 수 없었는지 등을 검토하도록 명시하고 있음.³⁾

○ 이와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은 2022년 3월부터 행정안전부와 조직 신설을 협의하였으나, 정부의 인력 감축 기조⁴⁾에 따라 협의가 중단되어 국가위원회의 조직규모 등을 확정하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동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국가위원회의 설치 근거는 2022년 1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국가위원회의 설치를 미리 예측할 수 있었다는 점, 제정된 법률의 시행 준비를 위한 사전준비 기간이 부칙 시행일 규정에 공포 후 6개월로 설정되어 있었으며

2)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3)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 요구에 앞서 당초 본예산 편성시 예측할 수 없었는지, 연도 중에 시급하게 지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기정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142.)

4) 부처별 매년 정원 1% 감축 및 인력재배치 방안 발표(2022.7.14.),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위하여 2022년 9월 전 정부위원회 정비(2022.9.7.)

정부의 예산안 확정까지는 더 충분한 기간이 보장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무조정실의 적극적인 관계부처 협의 등 사전 준비가 미흡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한편, 예비비 배정을 통하여 집행된 동 사업은 국가위원회의 미구성, 예비비 과다요구·배정 등으로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음.

○ 동 사업은 예비비 4억 2,360만원 중 2억 4,52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이 57.9%에 불과하였으며, 1억 7,840만원이 불용 되었음.

- 내역사업별로는 국가위원회 운영 사업, 지속가능발전정보망 운영 사업의 집행률이 각각 7.8%, 18.4%로 부진하였음.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 사업 예비비 집행내역〉

(단위: 천원, %)

내역	예비비	집행액	불용액	집행률	비고
① 국가위원회 운영	93,600	7,340	86,260	7.8	◦ 위원회 구성 지연에 따른 회의 미개최 및 참석수당 등 미집행
- 일반수용비(210-01)	86,500	4,550 ¹⁾	81,950	5.3	
- 임차료(210-07)	5,000	690 ²⁾	4,310	13.8	
- 사업추진비(240-01)	2,100	2,100	-	100.0	
② 지속가능발전정보망 운영	80,000	14,700	65,300	18.4	◦ 지속가능발전포털 과업기간 축소 및 위탁방식 변경
③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방향 연구	50,000	45,454	4,546	90.9	-
④ 지속가능발전 우수사례 조사 및 정책연구 포럼	200,000	179,763	20,237	89.9	-
합계	423,600	245,157	178,443	57.9	

주 1) 지속가능발전 우수사례조사 및 정책연구포럼 용역 제안서 기술평가수당 등

2)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관련 전문가 간담회 회의장 임차

(자료: 국무조정실)

○ 국무조정실은 2023년 3월 예비비 요구 시 국가위원회 구성과 무관하게 집행되어야 하는 내역사업⁵⁾뿐만 아니라 국가위원회 구성의 사전준비적 성격을 갖는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방향 연구 사업⁶⁾, 국가위원회 구성 이후 집행이 가능한 국가위원회 운영 사업에 대한 예비비를 일괄적으로 요구하였음.

-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방향 연구용역은 2023년 8월 계약이 체결되어 12월에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국무조정실은 11월말 부처 및 연구기관 등 관련기관에 민간위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국가위원회 구성은 연내에 구성되지 못했으며, 이에 국가위원회 운영 예산 대부분이 불용되었음.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구성 추진 경과(2024년 6월말 기준)〉

시기	추진 경과
2022.01.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2022.07.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
2022.09.	◦ 정부위원회 정비 방안 확정 및 발표(행정안전부)
2022.12.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제10기 임기 종료
2023.03.	◦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비비 배정
2023.08. ~ 2023.12.	◦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방향 연구용역
2023.11.	◦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 민간위원 후보자 추천 요청
2024.2. ~ 2024.6. 현재	◦ 민간 위원 후보자(안) 검증 중

(자료: 국무조정실)

5) 지속가능발전정보망 운영, 지속가능발전 우수사례 조사 및 정책연구 포럼

6) 국무조정실은 2022년 1월 제정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지위가 격상된 국가위원회의 운영 내실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해당 연구비용 예비비를 요청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지속가능발전정보망 운영 사업의 경우 10개월분의 예비비를 산정였으나, 실제 계약은 8월에 체결되어 사업기간이 약 4개월로 크게 줄었음.⁷⁾

〈지속가능발전정보망 운영 사업 추진 경과〉

시기	추진 경과
2023.03.	◦ 예비비 배정(10개월분)
2023.07.	◦ 지속가능발전포털 운영 입찰공고
2023.08.	◦ 지속가능발전포털 운영 계약 체결
2023.08.~ 2023.12.	◦ 지속가능발전포털 운영사업 추진

(자료: 국무조정실)

-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예비비 요구시 집행가능성을 감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과거에도 국회에서 국무조정실의 예비비 불용 문제를 지적한 사례가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국무조정실은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예비비를 요구하여 예비비 불용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23년에도 국무조정실이 집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예비비를 배정·집행한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참고로, 최근 5년 국무조정실의 예비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국무조정실이 예비비로 집행한 11개 사업 중 5개 사업의 집행률이 80% 미만 수준에 불과하여 예비비의 비효율적인 운용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7)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그 밖에 포털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유지·보수 등 운용비용을 절감하였다는 입장임.
(중전) 환경부 → 환경연구원 → 업체 / (변경) 국무조정실 → 업체

〈2019회계연도 국무조정실 예비비 집행부진 관련 시정요구사항〉

회계연도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형	조치결과	조치 상황
2019	◦ 국무조정실은 시급성이 부족한 신규사업을 국회 의결 없이 예비비로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향후 추진단 구성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로 예비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도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예비비를 요구하여 예비비 불용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시정	○ 향후 예측하지 못한 소요로 예비비 집행 시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예비비를 요구하여 예비비 불용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청년정책추진단 운영 예산을 '20년부터 본예산에 편성하고 있으며,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집행하고 있음 * '19년 예비비는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19.7)에 따른 추진단 신설로 인해 불가피하게 편성	조치완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9회계연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2019~2023회계연도 국무조정실 예비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회계연도	세부사업	예비비 (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2019	생활SOC추진단 운영	1,711	1,223	20	468	71.4
	부패예방감시단 운영	674	609	-	65	90.4
	청년정책추진단 운영	1,025	864	-	161	84.3
202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 운영	3,416	3,384	8	23	99.1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지원단 운영	7,778	5,464	1,886	428	70.2
2021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	509	484	-	25	95.1
	청년정책추진단 운영	708	694	-	14	98.0
2022	부패예방추진단 운영	336	325	-	10	96.9
	규제개혁추진단 운영	3,632	2,861	220	551	78.8
2023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운영	424	245	-	178	57.9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 위원회 운영	658	499	-	158	75.9

(자료: 대한민국정부, 각 연도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국무조정실은 향후 예측할 수 있는 지출에 대해서는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집행해야 하는 경우 면밀한 예산 추계 등을 통하여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2) 국가위원회 구성 지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 공백 발생

2024년 6월말 현재까지 국가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지속가능발전의 추진을 위한 위원회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무조정실은 국가위원회의 구성을 조속히 완료할 필요가 있음.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는 국가위원회의 업무로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심의, 중앙추진계획 심의·점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개정 및 국가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 계획에 대한 검토와 그 결과의 관계 기관 통보,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발전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 등을 규정하고 있음.⁸⁾

8)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7조(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① 정부는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이하 “국가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제5장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시책 중 소관 분야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그러나, 종전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른 제10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임기가 종료된 2022년 12월 이후부터 2024년 6월 말 현재까지 국가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어 국가위원회의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4조⁹⁾ 및 시행령 제9조¹⁰⁾는 중앙행정

제11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국가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법령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관계 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16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국가위원회는 2년마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결과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이하 “국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9)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4조(법령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관계 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0)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9조(법령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법령안의 통보 시기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령안을 송부하는 때로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중·장기 행정계획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기관의 장이 국가기본전략과 관련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 그 내용을 국가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국가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제10기 지속가능위원회 임기가 만료된 2022년 12월 이후에는 국가기본전략과 관련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그 결과에 대한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국가기본전략 관련 행정계획 수립·변경 통보 및 검토결과 통보 현황>

(단위: 건)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6.
수립·변경 통보	6	2	8	5	13 ²⁾	37 ³⁾
검토결과 통보	6	2	8	3 ¹⁾	-	-

주: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라 검토대상 행정계획이 확대(72→189개)

주1) 제10기 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2022.12.3.) 이후 접수된 행정계획 2건 검토결과 미통보

주2)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주3)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 35건, 국가수도기본계획변경안 1건, 지하수 기본계획 변경안 1건

(자료: 국무조정실)

- 또한, 2024년은 국가위원회가 2년마다 수행해야 하는 중앙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발전보고서 작성·공표 등의 주기가 도래하는 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위원회가 연내 구성된다 하더라도 해당 업무가 내실 있게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장기 행정계획의 통보 시기는 그 중·장기 행정계획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중·장기 행정계획의 근거 법령에서 관계 기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때를 말한다)으로 한다.

④ 국가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법령안이나 중·장기 행정계획안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국가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반영 결과를 국가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2024년 7월 현재 2024년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용역이 진행 중이며, 해당 용역 결과에 따라 지속가능발전보고서를 작성·공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중앙추진계획 점검,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 주체인 국가위원회가 부재한 가운데 용역이 착수되었다는 점, 내실 있는 업무의 수행을 위해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의견 요청 또는 조사·연구 의뢰¹¹⁾ 등의 제도적

1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8조(중앙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 ① 국가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국가위원회는 중앙추진계획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국가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앙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을 마친 경우 그 점검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무조정실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국가지속가능성 평가) ① 국가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가지속가능성 평가를 하는 경우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 자료·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국가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무조정실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국가보고서의 작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이하 “국가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국가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국가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국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위원회는 국가보고서의 효율적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자료·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국가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고서를 관보,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 또는 국무조정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公表)할 수 있다.

장치가 국가위원회 미구성으로 인하여 활용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의 효과성이 제한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국무조정실은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강화를 위하여 제정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관련 법정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국가위원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할 필요가 있음.

(3) 예비비 과다배정 후 불용 발생 부적절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운영 사업은 연도 중 지출할 시급성·보충성 및 집행가능성 등이 결여된 예산을 예비비로 과다하게 배정받아 불용이 발생하였으므로, 국무조정실은 향후 예비비 요구 시 시급성 및 집행가능성 등 예비비 편성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비비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예비비는 「국가재정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비비 요구에 앞서 ①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예측할 수 없었는지(예측 불가능성), ② 연도 중에 시급하게 지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시급성), ③ 기정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한지(보충성)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무조정실은 미디어발전위원회의 출범(2023년 4월)에 따른 운영비·용역비 소요 등을 사유로 2023년 5월에 예비비 6억 5,800만원을 배정받았음.

〈2023년 국무조정실 일반예비비 배정 조서〉

(단위: 천원)

장(분야)				예비비 지출액	내역
관 (부문)	항 (프로그램)	세항 (단위사업)	목		
01 국정운영				657,579	
	7000 국무총리실			657,579	
		7035 국가적 중장기 추진과제 지원		657,579	
			110 인건비	18,500	▪ 행정실무원 1명 보수
			210 운영비	262,179	▪ 회의참석수당, 외부회의실 임차료 등
			220 여비	69,100	▪ 위원회 회의지원 및 해외 정책사례 조사 등
			240 업무추진비	20,700	▪ 세미나·간담회·자문회의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250 직무수행경비	18,900	▪ 부서장 등 직책수행경비
			260 연구용역비	220,000	▪ 미디어·콘텐츠 발전방안 관련 정책연구용역
			320 민간이전	1,700	▪ 행정실무원 4대 보험 및 국민연금 지급금
			420 건설비	46,500	▪ 외부회의실 공사비

(자료: 국무조정실)

□ 그러나 동 사업 예산액 6억 5,800만원 중 1억 5,800만원이 불용(불용률 24.0%)되었는데, 특히 국외업무여비와 공사비 불용액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먼저, 국외업무여비(220-02목)로 편성된 3,9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음.
- 국무조정실은 예비비 요구 시에는 선진국(미국) 미디어 규제에 대한 자료수집·심층분석을 위해 국외업무여비를 편성¹²⁾하였으나, 위

12) <국외업무여비(220-02목) 산출내역>

원회 내부 논의를 심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해외 현장방문을 추진하지 못했다고 설명함.

- 예비비는 예산 외의 지출로 제한적으로 배정되어야 함에도, 연도 중 해외 현장방문의 필요성이 없어 국외업무여비 예산이 불용된 것은 예산 집행지침 상 시급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공사비(420-03목)는 미디어발전위원회 서울회의실의 전기·통신·소방·인테리어 등 공사를 위해 4,350만원, 미디어발전위원회 지원단 활동을 위한 세종사무실 공사비 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예상보다 서울회의실 공사비가 적게 소요되었고, 세종사무실 공사는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사업에서 지출됨에 따라 2,600만원이 불용(불용률 55.3%)되었음.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관련 2023년도 공사비 지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자금이체일자	지출액	지출건명	수령인명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7011-250)	2023-07-18	2,959	세종사무실 네트워크 공사	삼광전기통신
미디어·콘텐츠산업 융합발전위원회 운영 (7035-322)	2023-08-10	2,354	서울회의실 전기 공사	(주)이레이앤씨
	2023-08-10	1,254	서울회의실 통신 공사	삼광전기통신
	2023-08-10	14,520	서울회의실 OA 공사	준오피스
	2023-08-10	2,634	서울회의실 소방 공사	주식회사 피스코

(자료: 국무조정실)

- 미국 정책사례 조사 3,930만원
- 항공료: 833만원 × 3인 + 351만원 × 2인 = 3,201만원
 - 숙박비: (\$223 × 3인 + \$176 × 2인) × 3인 × 1,290 = 395만원
 - 일식비: (\$142*3인+\$111*2인)*4일*1,290 = 334만원

(자료: 국무조정실)

- 그러나 세종사무실 공사의 경우 기정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함에도 미디어발전위원회 추진단 운영을 위한 공사비를 예비비로 배정한 점은 예산 집행지침 상 보충성 요건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고,¹³⁾ 서울회의실 공사비 또한 예비비 요구 시 실소요액에 비해 과다계상하여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면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국무조정실은 예비비 요구 시 연도 중 지출할 시급성·보충성 및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비비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2019회계연도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 시 국무조정실에 대하여 예비비의 집행가능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정요구사항이 의결된 바 있음.¹⁴⁾

13) 더구나 ‘국무조정실 기본경비(7011-250)’ 사업은 2023년도 예산현액 64억 1,100만원 중 57억 1,900만원이 집행되고, 6억 9,200만원이 불용되어 불용률이 10.8%에 달함.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6,489	-	△78	6,411	5,719	-	692	6,365

(자료: 국무조정실)

- 14) ○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시정요구사항: 국무조정실은 시급성이 부족한 신규사업을 국회 의결 없이 예비비로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향후 추진단 구성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로 예비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도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예비비를 요구하여 예비비 불용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시정)
-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시정요구사항: 국무조정실은 예비비를 배정받아 지출할 때 당해 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수준을 고려하여 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주의)

(4) 임시조직의 서울회의실 별도 조성을 위한 예산지출 과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서울회의실 조성·원상복구 및 임차를 위해 약 1억 1,2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서울회의실의 사용기간(9개월)에 비해 과다한 측면이 있으므로, 국무조정실은 향후 임시조직의 회의장 조성을 위한 예산 편성 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의 2023년도 임차료(210-07목)와 공사비(430-03목) 배정액 중 대부분은 세종시의 미디어발전위원회 지원단 사무실과 별도로 서울에 회의실을 운영하기 위한 임차료 및 회의장 공사비임.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운영 사업 임차료 및 공사비 산출내역>

임차료(210-07목)	공사비(430-03목)
8,580만원	4,650만원
○ 공청회 등 장소 임차료 750만원(150만원×5회) ○ 서울회의실 임차료 6,000만원(750만원×8월) ○ PC등 전산장비 임대(서울회의실) 330만원 ○ 가전제품 임대(서울회의실) 385만원 ○ 사무용가구 임대 1,115만원(139만원×8월)	○ 서울회의실 공사 4,347만원 ○ 세종사무실 공사 303만원

(자료: 국무조정실)

<서울 회의실 개요 및 전경>

- (서울 회의장) (주)동원 리소스와 임대차 계약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3길 15, 동원빌딩 6층
 - 면적 : 전용 44평(147㎡), 공용 37평, 합계 88평
 - 용도 : 회의 준비공간, 소회의실 겸 위원 대기실, 회의장 1개소 (분리)
 - 월임대료 : 임대료 5,346천원, 관리비(약 2,228천원) 등 총 7,574천원
 - 계약기간 : '23.7.1. ~ '24.4.30.

서울 회의실 전경



(자료: 국무조정실)

- 미디어발전위원회에 서울회의실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민간위원 다수가 서울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전체회의 및 분과위원회의 잦은 회의 빈도를 고려한 민간위원의 접근성 및 대규모 인원의 수용가능성을 고려한 상설회의장을 서울에 임대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함.
- 그러나 1년간 운영된 한시조직의 회의장 조성을 위해 2023년에 2,080만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였고, 2024년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라 회의장 원상복구를 위한 공사비 1,562만원을 집행¹⁵⁾하였으며, 10개월분의 임차료로 7,574만원을 집행하는 등 총 1억 1,216만원가량이 소요되었는데, 서울회의실의 실제 사용기간(9개월; 2023년 7월~2024년 3월)을 고려할 때 별도 회의장 조성 후 원상복구를 위한 예

15) 서울회의장 원상복구 예산은 2024년 동 사업 공사비(430-03목)로 다음과 같이 집행되었음.

<서울회의장 원상복구 관련 2023년도 공사비 지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자금이체일자	지출액	지출건명	수령인명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 발전위원회 운영 (7035-322)	2024-04-09	12,760	미디어TF 서울 회의장 건축 원복 공사	준오피스
	2024-04-09	880	미디어TF 서울 회의장 전기 원복 공사	(주)이레이앤씨
	2024-04-09	1,980	미디어TF 서울 회의장 소방 원복 공사	주식회사 피스코

(자료: 국무조정실)

산 등을 투입하는 것은 방만한 예산운용으로 지적을 받을 소지가 있음.

- 실제로 미디어발전위원회의 전체회의 및 분과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면, 서울회의장 조성(2023.7.12.) 전에는 서울청사 회의실, 디지털 플랫폼정부위원회 대회의실, 한국프레스센터 대회의실, 한국콘텐츠진흥원 CKL 기업지원센터 회의실 등에서 임차료 집행 없이 회의를 개최하여 별도 회의장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회의장 조성 전 미디어발전위원회 전체회의·분과위원회 개최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참석자	개최장소	임차료 집행액
전체회의	'23.4.17 (1차)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14명	서울청사 대회의실 (9층)	-
	'23.5.18 (2차)		정부위원 4명, (이하 대참 포함) 민간위원 14명	서울중앙 우체국 스카이홀(21층)	897.6
	'23.6.15 (3차)		정부위원 4명, 민간위원 13명	메이필드 호텔 이원홀	4,618.5
분과위원회	'23.4.25 (1차)	법제	민간위원 8명, 부처 국·과장 4명	서울청사 회의실(10층)	-
		산업	민간위원 6명, 부처 국·과장 4명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대회의실(13층)	-
	'23.5.9 (2차)	법제	민간위원 8명, 부처 국·과장 4명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대회의실(13층)	-
		산업	민간위원 8명, 부처 국·과장 4명	한국프레스센터 대회의실(17층)	-
	'23.5.23 (3차)	법제	민간위원 8명, 부처 국·과장 4명	한국프레스센터 대회의실(17층)	-
		산업	민간위원 8명, 부처 국·과장 4명	한국프레스센터 대회의실(17층)	-
	'23.6.13	법제	민간위원 8명,	콘진원 CKL	-

구분			참석자	개최장소	임차료 집행액
	(4차)		부처 국·과장 4명	기업지원센터 회의실(11층)	
		산업	민간위원 7명, 부처 국·과장 4명	한국프레스센터 대회의실(17층)	-
	'23.7.4 (5차)	통합	민간위원 12명 (법제 5, 산업 6), 부처 국·과장 4명	콘진원 CKL 기업지원센터 회의실(11층)	-

(자료: 국무조정실)

- 따라서 국무조정실은 향후 임시조직의 별도 회의실 조성 예산 편성 시 청사·유관기관 회의실을 활용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3.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없음

V. 대체토론 요지

해당사항 없음

VI.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1. 국가보훈부 소관

-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2.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하여 4건의 시정요구(주의)를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함.

3.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VII. 심사결과

1. 국가보훈부 소관

- 원안의결

2.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원안의결, 시정조치 요구사항 채택

3.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원안의결

VIII. 소수의견 요지

해당사항 없음

IX.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은 향후 예측할 수 있는 지출은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집행해야 하는 경우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불용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주의)
- 국무조정실은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제정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국가위원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할 것(주의)
- 국무조정실은 향후 예비비 요구 시 시급성·보충성 및 집행가능성 등 예비비 편성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주의)
- 국무조정실은 향후 임시조직의 별도 회의장 조성을 위한 예산 편성 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주의)